

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7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27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
나.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-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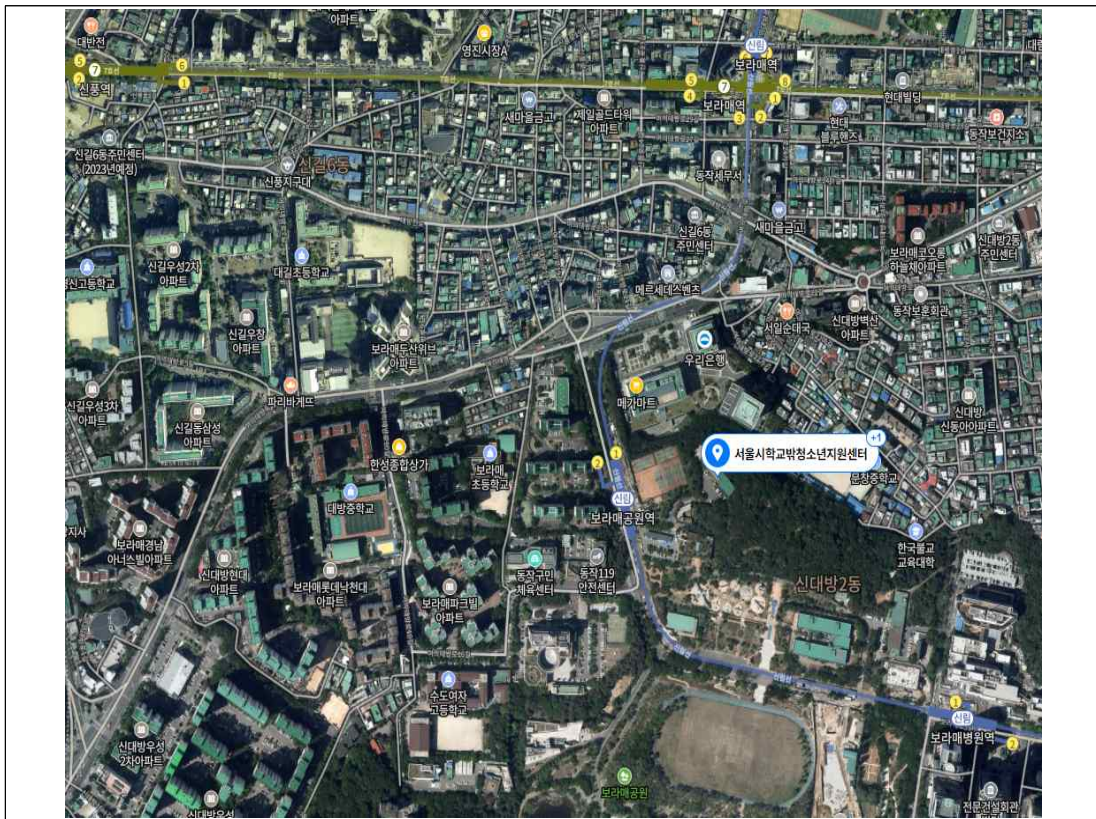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,
- 정서불안, 사회적 관계 단절, 진로 미확립 등 복합적 어려움과 위기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상담·진로·진학 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.
- 또한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학업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
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
-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-1. 자유회관 3층
- 개관일자 : 2001. 4. 6.
- 시설규모 : 307.56㎡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활동실, 휴게공간 등
- 이용대상 : 학교 밖 청소년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1년 6개월(2026.12.28. ~ 2028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799백만원('26년)

- 산출근거

- 인건비 605,728천원, 운영비 57,847천원, 사업비 1,135,488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감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보영 (☎02-2133-4131)